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정보화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여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10월 4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

◎법률 제8032호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일부개정법률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11호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의한”을 “따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중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를 각각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명칭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로 한다)
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5. 프로그램의 공표연월일(프로그램저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연월일)
6.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의 제목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복제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복제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그 등록된 프로그램저작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그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各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등록절차 등) ①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프로그램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하여 그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공보의 발행,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第23條第3項의 프로그램 登錄簿 및 第23條第4項의 프로그램 公報”를 “제26조의2제1항의 프로그램등록부 및 제26조의2제2항의 프로그램공보”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4 및 제34조의5로 하고,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정보

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의3(시정권고 등) ①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전송한 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정보 삭제

3. 전송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선·조정하고,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프로그램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2.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5.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지원
6.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7.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8.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3年”을 “5年”으로 한다.

제47조 중 “5年”을 “7年”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의2제1항”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 중 “初·中等教育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 중 “高等教育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중 “民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45조 중 “著作權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49조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프로그램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자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④(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본다.

⑤(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삭제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법」 등 그 밖의 지적재산권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 및 공보 관련규정의 정비(법 제23조·제26조 및 제26조의2)

종전에는 프로그램저작권 자체에 관하여는 프로그램등록부 및 프로그램공보에,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제한 등에 관하여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및 프로그램저작권공보에 각각 등재

하도록 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용어의 혼동을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등록부 및 프로그램공보로 일원화하는 등 등록 및 공보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창작 후 1년이 경과한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 허용(법 제24조)

(1) 각종 경제활동에서 프로그램등록증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그램 등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프로그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창작연월일의 추정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프로그램 등록기간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조달청과의 계약체결 또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신청을 위한 평가 등의 경제활동에서 프로그램등록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 신설(법 제34조의3 신설, 법 제36조제4호)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내에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법 제3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의 업무에 새로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추가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함.

마.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법 제46조 및 제47조)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저작권법」 등 그 밖의 지적재산권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배포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을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10월 4 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법률 제8033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